

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■

2011. 12. 29. 선고 2010헌바1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위헌소원 : 합헌결정

김영수 변호사

1.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, 구 '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' (2002. 3. 30.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, 2010. 3. 31.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제1항제1호,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.

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,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,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,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거래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규정될 내용에 대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, 과징금 부과기준 중 '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'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,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,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며, 명의신탁 과정에서 조세포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도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,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

이 사건 결정은,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.

2. 다운로드 : [2010헌바1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위헌소원](#)